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안내

한-인도 CEPA의 경우 HS 2007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빙서류가 작성(발급)되어야 하나, 對인도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애로 방지를 위해 HS 2022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공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1. 원칙

- 2007년 기준의 통합품목분류표(HS 2007) 기준

HS 2022 기준	HS 2007 기준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2. 예외

- 신청인이 발급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현행 통합품목분류표(HS 2022) 기준 발급가능 (*별도 지침 시행 전까지)

II. HS 2022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적용대상 협정

- 한-인도 CEPA

2. 제출서류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설명서 등

- (2) HS 2022 → HS 2007 품목번호 연계 증빙자료

3. 작성방법

- (1)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는 HS 2007 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 (2) 원산지증명서 제7란에는 HS 2022 기준에 따른 HS번호를 기재 (단, 이 경우 해당 HS번호에 해당하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이 없거나 상이하여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4. 시행일자

- '22.4.12.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건부터 적용

|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허윤희 관세사

T 070-4353-1593
E yhheo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